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, 병무청장등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병역법」이 개정(법률 제21387호, 2026. 2. 27. 공포, 8. 28. 시행)됨에 따라,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고,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저출생 극복과 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사회복지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휴가 신설(안 제59조제1항제2호)

- 나.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학위 취득 인정 기준 마련(안 제78조의4제5항, 제6항 신설)
- 다.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81조제1항제1호)
- 라.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대상에 대체역 허위 편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포함(안 제163조제2항제1호)
- 마.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(안 제163조의5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: 10일 이내
제78조의4의 제목 “(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)”을 “(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“절차”를 “절차,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확인 방법 및 절차”로 한다.

⑤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 「고등교육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이하 ‘박사학위 수여예정 증명서’라 한다)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박사학위 수여 예정일이 박사학위 수여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의 박사학위 취득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.

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63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86조·제87조·제87조의2 또는 제88조”를 “법 제86조·제87조·제87조의2·제88조·제88조의2 또는 제94조”로 한다.

제16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3조의5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)은 법 제82조의5제3항에 따른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병역의무자 등 이용자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
2. 상담, 교육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 공간
3. 지역별 병역의무자 수, 주변 환경 등 입지의 타당성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 안내·교육
2. 적성·전공 등을 고려한 군 특기 추천 등 병역진로설계·상담
3.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개발 정보제공
4.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지원과 관련된 업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8조의4제5항 · 제6항 · 제7항 및 제16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, 제1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적용례) 제1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병역명문가 선정가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관하여는 제16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사회복무요원의 휴가)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청원휴가 가. ~ 카. (생 략) <신 설> 3. ~ 5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제59조(사회복무요원의 휴가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 <u>타.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</u> <u>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: 1</u> <u>0일 이내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78조의4(전문연구요원의 박사 학위 취득 <u>유예기간</u>) ① ~ ④ (생 략) <신 설>	제78조의4(전문연구요원의 박사 학위 취득 <u>유예기간 등</u>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</u> <u>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은</u> <u>「고등교육법」 등 관계 법령에</u> <u>따라 박사학위 수여예정 사실을</u> <u>증명하는 서면(이하 “박사학위</u> <u>수여예정 증명서”라 한다)을 발</u> <u>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</u> <u>박사학위 수여 예정일이 박사학</u> <u>위 수여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</u>

<신 설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.

제81조(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) ① 법 제38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

날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의 박사학위 취득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,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.

제81조(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-----

업경영인(이하 “후계농어업경영인”이라 한다)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. 다만,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·군·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2. 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63조(병역명문가 선정대상) ① (생략)

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“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. 법 제86조·제87조·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

2. ~ 5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-----.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63조(병역명문가 선정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법 제86조·제87조·제87조의2·제88조·제88조의2 또는 제94조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63조의5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)은 법 제82조의5제3항에 따른 지원시설을 설치

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병역의무자 등 이용자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

2. 상담, 교육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 공간

3. 지역별 병역의무자 수, 주변환경 등 입지의 타당성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병역의무 이행 절차 및 방법 등 안내·교육

2. 적성·전공 등을 고려한 군특기 추천 등 병역진로설계·상담

3. 군 복무 적응에 필요한 군 생활 및 자기개발 정보제공

4.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 지원과 관련된 업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39
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2641